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39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정춘생 · 강경숙 · 김재원
김준형 · 서왕진 · 이해민
전진숙 · 최민희 · 최혁진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는 국민의 일상 · 건강 ·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에게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응이 필요한 과제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 · 추진 ·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특별회의에서 도 기후 및 환경 관련 정책과제가 주요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바, 기후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정책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크므로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포함(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신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호의2. 이후에 너지환경부차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 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10. ~ 16. (생 략)</p>	<p>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u> 10. ~ 16. (현행과 같음)</p>